

부산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3343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훈, 정은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2. 2.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28,827,8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827,886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748042 양소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28. C은 원고에게 6,153,630원과 그 중 4,849,101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별건 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별건 1판결은 2019. 7.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가소390742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3. 30. C은 원고에게 58,436,456원과 그 중 29,954,281원에 대하여 2020.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별건 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별건 2판결은 2021. 5. 25.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의 아버지인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21. 12. 1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가 3/11 지분, 자녀인 C, E, F, G이 각 2/11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는데, 2022. 2. 1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한편 D는 2019. 10. 7. H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201,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는 2022. 6. 30. 주식회사 I에게 채무자를 G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마. 이 사건 약정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별건 1판결과 별건 2판결의 채권이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위 채권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다. 피고의 악의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그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법률상 추정되고, 반증이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D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61,446,624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320,0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보았거나 다툼이 없거나 갑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28,827,886원(= (320,000,000원 - 161,446,624원) × 2/11)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식회사 I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827,886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무영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아파트 L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5층 공동주택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 동래구 J 대 11792.1㎡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M 철근콘크리트조 84.75㎡

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179210분의 2322.끝.

